

kiri Weekly

2011.8.1 제142호

이슈

기업후지보험을 활용한 업무연속성 관리방안

포커스

유럽 및 아시아 지역, 10년간 세계보험시장 성장을 견인

금융보험 해설

개인연금의 이해(4): 개인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차이

국내금융 뉴스

2/4분기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 금융회사, 정부 디폴트에 대비한 대응방안 모색
유럽 _ ING 부채감축, 해외보험사업 기업공개 가능
일본 _ 소프트뱅크그룹, 인터넷 생명보험회사 설립 추진
중국 _ 지준율 인상, 방카슈랑스 매출 감소와 해약률 증가 야기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한 업무연속성 관리방안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 최근 기업의 리스크관리가 화재나 폭발에 의한 재물사고, 배상책임손해사고, 인적사고와 같은 순수리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중단손해(business interruption loss)까지를 포괄하는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가 기업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업무연속성관리를 채택한 모건스탠리는 사고발생 하루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에서 ‘업무연속성관리 표준기준 또는 규격’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정부 조치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들은 국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은 업무연속성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함.

■ 우리나라도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사후적인 보험가입도 부진한 상태임.

■ 따라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도 정부정책과 연계한 업무중단리스크 담보상품을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게 개발·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지원법상 인정된 우수기업 중에서 세제지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입법목적¹⁾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1)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1. 문제제기



- 최근 들어 화재나 폭발, 소요·노동쟁의 등과 같은 인위적인 재해, 또는 집중호우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기업이나 정부의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중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²⁾.
- 이와 같이 기업들의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경제적 손실³⁾이 크게 증가하고, 기업의 평판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높음.
- AON의 리스크재무대책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 중 업무중단리스크(business interruption risk)가 2001년에는 평판손실과 변화 실패에 이어 3번째, 2011년에는 5번째로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됨.

〈표 1〉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중요 리스크 순위

순위	2001	2003	2005	2011
1	평판손실	업무중단/변화실패	평판손해	경제위축
2	변화실패		업무중단	규제법률리스크
3	업무중단	종업원사고	변화실패	경쟁증가
4	제조물책임	종업원고용	제조물책임	평판리스크
5	컴퓨터범죄	평판손실	규제/법률 리스크	업무중단
6	일반배상책임	전략적 협조실패/전문인배상	재물손해	혁신실패/ 소비자니즈 불충족
7	재물손해		종업원사고	전문인보유실패
8	종업원고용	일반배상책임	테러리스크	상품가격리스크
9	임원배상책임	제조물책임	지배구조	기술실패/시스템실패
10	종업원사고	재물손해	전문인배상책임	현금흐름/유동성 리스크

자료: AON, Biennial Risk Finance Survey(<http://www.aon.com>).

- 2) 자연재해의 경우 2011년 5월 일본 동북부지역의 강진으로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협력회사, 항공업체, 정유회사, 철강회사, 온라인서비스회사의 업무중단이 발생한 바 있고, 7월 27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EBS 라디오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함. 여기에 인위적인 요인으로 의한 업무중단은 자연재해보다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개연성이 큼. 예를 들면, 자동차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Y업체가 노동쟁의로 직장을 폐쇄하게 되자, 국내 완성차업체가 큰 생산차질을 경험한 바 있으며, N금융기관은 지난 4월 전산센터의 서버 문제로 3일 동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
- 3) 미국 세계무역센터(WTC) 테러의 보험금 356억 달러 중 재물손해보험금은 105.6억 달러인 반면, 기업휴지보험금은 121억 달러에 달함. 杉野文俊(2007. 8. 27), 事業継続マネジメント(BCM)にみる現代的风险マネジメントの思考法, 『損保研究』第39巻 第2號

■ 기업의 사업과정 특정 부분에서 재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 발생 시 매출 감소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상비 등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그리고 거래선 단절 등과 같은 경제적 손실로 인해 기업들의 업무연속성 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의 중요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업무연속성관리는 2001년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⁴⁾를 계기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규격화되기 시작하여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채택되었으며, 이에 보험회사들도 업무연속성관리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화재나 폭발에 의한 재물사고, 배상책임손해사고, 인적사고와 관련된 리스크에만 국한하지 않고 업무중단손해 등의 전반적 리스크 요인 모두를 포괄하는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들은 순수리스크(pure risk) 중 업무중단리스크를 제외한 재물사고, 배상책임손해사고, 인적사고만을 고려한 전통적 개념의 리스크관리에만 머물러 있음.
-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을 활용한 리스크 재무대책을 강구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활용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임.
-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규격과 유사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⁵⁾」이 2007년 7월 19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보험상품과의 연계성은 전혀 발견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업무연속성관리를 위한 보험상품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업무연속성 관리와 보험상품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4) 모건스탠리는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 있었으나, 충분한 사전훈련을 통한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업 데이터 보관으로 방대한 데이터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영업재개가 가능하게 되면서 큰 관심을 모음. 매일경제(2011. 7. 18), “글로벌기업 이젠 재난대비 경영”.

5) 우리나라 기업지원법은 2011년 5월에 개칭된 ISO/TC 223(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Technical Committee: 국제표준화기구 사회안전기술위원회) 제9차 총회에서 공식문서로 인증되어 공신력을 확보함. 아시아경제(2011. 6. 21).

2. 보험을 활용한 업무연속성관리 필요성



■ 업무연속성관리는 자연재해, 전산시설의 해킹, 테러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기업, 정부기관 등의 업무중단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재난대처프로그램으로 전사적 리스크관리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나 관리해야 할 리스크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 일반적으로 업무연속성관리는 ① 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업무중단리스크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 및 이해하고, ② 업무연속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정의하며, ③ 업무연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개발, ④ 개발된 업무연속계획에 대한 예행연습 및 평가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중단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관리기법임.
- 기업의 업무중단요소는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 화재나 폭발, 지진, 홍수 발생, 근로자 파업, IT실패, 전력공급 중단, 전염병 발생, 직원들의 질병 발생, 폭설로 인한 작업장 접근 곤란 등을 들 수 있음.

〈표 2〉 리스크관리와 업무연속성관리의 비교

구분		전통적 리스크관리	전사적 리스크관리	업무연속성관리
대상 리스크		순수리스크	순수리스크, 투기적 리스크	순수리스크(업무중단)
사이클	1단계	리스크의 확인 및 분석	상황(전략적리스크관리상황, 리스크평가기준, 리스크관리 체계)의 확정	업무중단리스크 존재확인
	2단계	리스크처리수단의 검토	리스크의 확인 · 분석 · 평가	사업영향도 평가, 중요업무의 결정 및 목표의 설정
	3단계	최적 수단 선택	리스크의 처리	업무연속성계획의 결정
	4단계	수단의 실행	모니터링	교육, 훈련
	5단계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점검 및 시정조치

자료: 杉野文俊(2007), p. 91.

- 이에 비해 전사적 리스크관리는 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순수리스크⁶⁾와 투기적 리스크(speculative risk)의 존재를 확인하고, 각 리스크의 발생 빈도와 심도를 평가하며, 각각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최적의 수단(리스크 통제대책과 리스크 재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과정임.

6) 순수리스크는 화재, 폭발, 자동차충돌 등과 같은 사상(event)이 발생한 경우 손실로만 나타나는 리스크인 반면, 투기적 리스크는 도박 등과 같이 그 사상(event) 발생 시 손실 또는 이득의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

- 따라서 업무연속성관리는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보면 순수리스크인 업무중단리스크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다 상세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관리기법으로 볼 수 있음.

■ **결국, 업무중단리스크를 독립적인 경영관리기법으로 개발한 것이 업무연속성관리이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기업들의 업무중단 시 업무재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업무중단손해를 담보하는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업무중단의 손인(peril)이 화재, 폭발, 지진, 노동쟁의, 전산설비의 장애 등과 같은 리스크에 한정함.

■ **우리나라 기업휴지보험은 독립된 보험종목이 아니라 특정상품 내 하나의 담보위험이나 특약담보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매우 낮은 실정임⁷⁾.**

- 비교적 소규모 기업들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으로 화재, 폭발, 지진, 노동쟁의 등의 손인으로 인한 업무중단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1%도 되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비해 규모가 큰 기업들은 화재손해, 배상책임손해와 더불어 업무중단손해를 하나의 담보위험으로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⁸⁾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가입률은 10% 내외 정도임.
-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를 위한 보험활용도가 낮은 것은 경영자들의 인식 부족과 국내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상품제공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7) 이기형·한상용(2009. 3),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pp. 90~104 참조.

8) 화재를 담보하는 보험계약 중 보험가입금액이 2,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산출한 요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보험자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제2항」). 그 결과, 국내 보험회사들은 '80년대부터 재보험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업무중단리스크관리에 요구되는 보험수요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 유인이 낮았음.

3. 주요국의 업무연속성관리 관련 보험 활용현황



가. 미국

- 업무연속성관리는 2001년 9.11 테러,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이 지진이나 테러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 재해발생으로 경영 활동이 중단될 경우 중요 업무를 가능한 신속하게 복구시켜 기업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됨.
-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의 "Regulation 446"과 미국 유가증권딜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의 "Regulation 3510"은 모든 회원 기업들에게 업무연속성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⁹⁾.
- 미국 연방금융감독위원회(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¹⁰⁾는 금융회사에게 업무연속성 확보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켰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하고, 대표이사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
- 미국은 2007년 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관리계획(crisis management plan)을 포괄한 『재난 관리 및 업무연속성관리 표준: NFPA 1600(Standard on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 2007)¹¹⁾』을 제정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미국 손해보험회사는 업무연속성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조업체와 상업용 건물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기업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과 사업자종합보험(Business Owners Policy)을 통해 기업휴지손해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2003년 Safeco사가 미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휴지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¹²⁾, 중소기업체 중 45%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기업들이 업무연속성관리에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9) Business Continuity Institute,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Legislations, Regulations and Standards Version 6, January 2011(<http://www.thebci.org/LRSG.pdf>).

10) 연방금융감독위원회는 1979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연방준비은행(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국가신용기관감독국(NCUA), 환율통제국(OCC), 저축은행감독국(OTS)의 CEO가 이사회로 참석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원칙, 표준 등을 제정하여 감독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음(<http://ithandbook.ffiec.gov/it-booklets/business-continuity-planning/introduction.aspx>).

11) <http://www.nfpa.org/assets/files/pdf/nfpa1600.pdf>.

12) <http://www.insurancejournal.com/news/west/2003/10/22/33403.htm?print=1>.

나. 영국

-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업무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유도정책의 일환으로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하였으며, 기업들은 재난대비 역량과 복구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함.
- 영국은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시민 비상대처법(Civil Contingencies Act)』을 2004년에 개정함.
- 영국의 업무연속성관리 표준규격(BS 25999)으로 인해 기업들은 업무연속성 계획의 추진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업휴지보험 가입 등을 통한 업무연속성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게 됨.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2002년에 “업무연속성관리 공공표준 PAS56¹³⁾”을 제정, 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함.
- 또한, 2006년 12월 “업무연속성관리 표준규격 BS 25999(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tandard)”의 첫 번째 표준 “BS 25999-1 실행지침(Code of Practice)”, 2007년 11월에는 두번째 표준 “BS 25999-2 업무연속성관리의 명세서(Specification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를 제정함.
-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업무연속성관리 정책을 새로운 시장개척의 발판으로 삼아 기업들에게 업무연속성 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 보험료 수입 순위 5위인 Zurich보험사의 경우 “Zurich Risk Engineering,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ervices¹⁴⁾”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의 개발,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의 감사, 업무중단의 모델링, 업무에 대한 영향 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3) http://www.broadland.gov.uk/PDF/business_continuity_good_practice_guide.pdf.

14) <http://www.zurich.co.uk/RiskServices/riskengineering/strategicrisk/Businesscontinuitymanagementservices.htm>.

다. 일본

■ 일본도 정부차원에서 업무연속성관리 규격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경영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의 업무연속성 기준의 경우 2005년 3월 경제산업성이 IT 사고를 상정한 『업무연속성관리 계획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만든 이후, 2005년 8월 내각부의 중앙방재회의가 지진을 비롯한 생명 안전, 업무중단리스크 등 2차 피해까지를 규정한 『업무연속계획책정가이드라인 제1판』을 만들.
- 2006년 2월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BCP 책정운용지침』이 마련됨¹⁵⁾.
- 이러한 정부의 업무연속성관리 정책 추진에 따라 기업¹⁶⁾들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사업연속성관리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성장이 정체된 손해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영역으로 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손보재팬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업무연속성관리 도입정책과 연계하여 업무중단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으로 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 종합보험(all risk)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기업휴지보험시장이 큰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형 5개 손해보험회사의 2004년 4~11월 보험료가 이익보험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⁷⁾.
- 이를 연도별 추이로 보면, 화재나 자동차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시장의 보험료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기업휴지보험은 연간 28.3% 이상 성장함.

15) 일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chusho.meti.go.jp/keiei/antei/060217bcp_koukai.htm)

16) 2007년 10월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29%는 이미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을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고, 36.1%는 구축 중에 있으며, 32.5%는 구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사업연속성관리에 관심이 없는 기업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株式会社野村総合研究所(2007, 11, 22), 「BCP(事業継続計画)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BCP策定済みまたは策定中の企業は6割超～, NEW RELEASE(<http://www.nri.co.jp/news/2007/071122.html>).

17) ASIA INSURANCE REVIEW Vol. III Issue 5(2005, 1, 27), 「이익보험 수요확대로 13% 증수」.

〈표 3〉 일본의 기업휴지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백만엔, %)

구분	1998	2000	2004	2005	2008 (구성비)		CAGR
화재	1,242,505	1,134,946	1,156,444	1,203,329	1,416,959	15.7	1.5
자동차	4,659,480	4,648,906	4,713,138	4,671,268	4,352,143	53.9	-0.8
기업휴지	7,600	15,121	32,127	32,873	71,570	0.9	28.3
기타	1,810,293	1,661,193	1,726,568	1,751,293	2,230,270	27.6	2.4
합계	7,719,878	7,460,166	7,628,277	7,658,763	8,070,942	100.0	0.5

주: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실적이며, CAGR은 1998년을 기준연도로 한 것임.
 자료: 일본 보험연구소, 『손해보험통계호』, 각년도.

4. 결론 및 시사점



- 업무연속성관리는 기업을 비롯한 정부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 역량 보유 여부에 따라 계속적 기업으로 평가됨에 따라 전 세계적 중요 이슈로 부각됨.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¹⁸⁾의 경우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기업들의 관리영역으로 단순히 남겨두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표준규격을 제정·공표하고 있고, 기업들은 업무연속성관리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손해보험회사들도 국가의 업무연속성관리 정책과 연계된 기업휴지보험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관리에 기여하고 있음.

18) 국제규격으로는 ISO의 ISO/PAS 22399:2007(Guideline for inci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이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2006년에 AS/NZS 5050(Business Continuity Managing disruption-related risk)규격을 제정하였음.

〈표 4〉 주요국의 업무연속성관리 규격 운영현황

국가	규격 명칭	작성주체	비고
영국	BS 25999(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2006, 2007)	영국규격협회(BSI)	예상되는 리스크로부터 사업 중단 시 사업영향도(Business Impact Analysis) 분석을 중요시함
미국	NFPA 1600 Standard on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200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일본	업무연속성계획책정가이드라인(2005. 3)	경제산업성	IT사고 상정한 BCP 책정 절차, 검토사항 규정
	업무연속성 계획책정가이드라인(제1판)(2005. 8)	내각부 중앙방재 회의	지진까지 상정한 BCP이며, 생명 안전, 2차 피해 등 규정

자료: 동경해상(2006), 사업연속계획(BCP)란, TRC EYE Vol. 85,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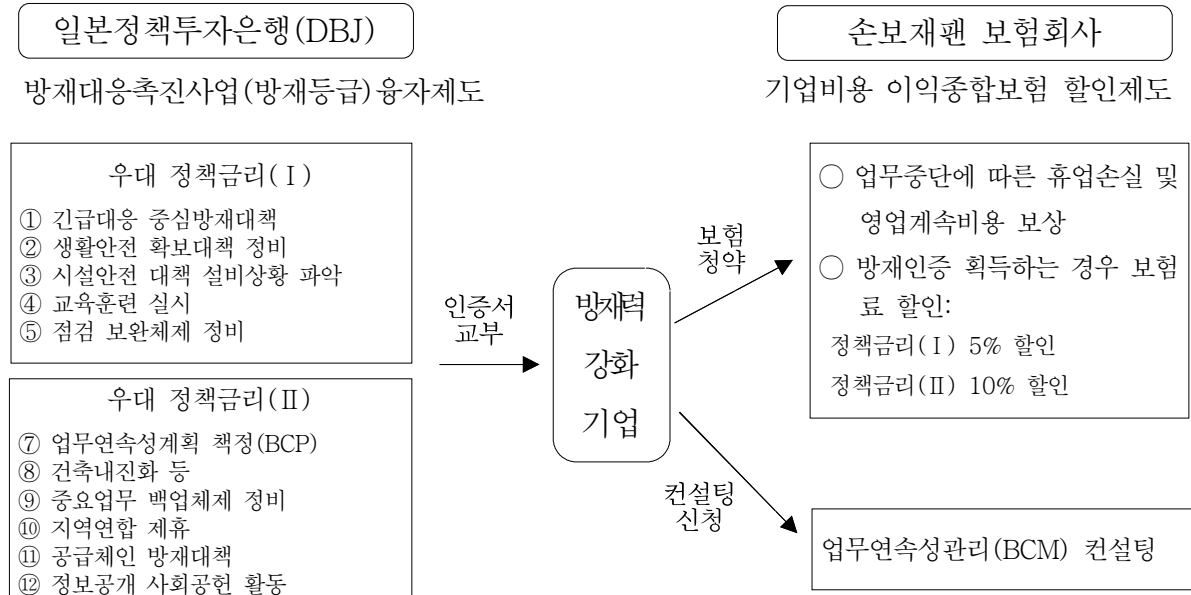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가 2007년 7월 19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2008년 9월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본격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사후대책인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통한 업무연속성관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연속성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손해 보험회사들처럼 국가정책과 연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업무중단리스크 담보 상품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기업 지원법과 같은 정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손해보험의 경제발전 지원기능을 제고하고, 일반손해보험의 신성장영역 개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함.
- 참고로, 일본의 손보재팬은 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업무연속성관리기준을 채택하고 소정의 등급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업무연속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비용이익종합보험의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 주고 있음.

〈표 5〉 일본 손보재팬의 BCP 연계 보험제도



자료: 일본정부투자은행 News Release(2006. 10. 5), 損害保険ジャパンと企業防災の取り組み支援で提携,
(<http://www.dbj.jp/news/archive/rel2006/1005.html>)

- 국내 보험회사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별로 업무중단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보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도 기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 우수기업이 세제지원(제21조), 자금지원 우대(제22조), 재해경감 설비자금(제23조)을 지원받는 경우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전제함으로써 재난관리의 완전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kiri**